

의안 번호	50
----------	----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50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4.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2. 제안이유

- 맞벌이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구립 돌봄센터 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아래 센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주 소	규모	정원	위탁운영법인	現)운영기간
구립길음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서경로6길 70 (길음동)	447㎡	49명	정인교회	2018.3.1.~ 2023.2.28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1)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3년 2월 28일자로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운영체)	주소	대표 (시설장)	정원	현원	위탁운영 기간	운영예산	비고
구립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정인교회에 서 무상임대)	서경로6길 70 (길음동)	이철웅 (곽수정)	49	35	2018.3.1~ 2023.2.28	8,984천원(월) (국시구)	- 시설장: 1인 - 종사자: 2인 - 월기본운영비: 8,180천원(국시비) - 토요운영비: 304천원(국시) - 구비운영비: 500천원(구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2)에서 구청장은 “종교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1조의2³⁾에서는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 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 추진은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재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3)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성북구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현황

□ 시설현황

(2022. 11월 현재)

연번	시 설 명	시 설 장 (종사자수)	행정동	소 재 지	위 탁 체	공간확보	정원	현원	위탁기간 (신고일)
1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곽수정 (3)	길음1동	서경로6길 70 (정인교회)	정인교회	무상임대	49	34	2018.3.1.~ 2023.2.28. (2012.2.8.)
2	석관동 꿈나무키우미	전해숙 (4)	석관동	한천로79길14-14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무상임대 (성북구)	35	35	2020.9.1.~ 2025.8.31. (2012.8.2.)
3	종암동 꿈나무키우미	장지안(3)	종암동	종암로19길 18 (종암중앙교회)	종암중앙교회	무상임대	49	44	2022.2.1.~ 2027.1.31. (2014.3.31)